학위수여및유사전공심의위원회운영규정 5-1-36

규정번호 5-1-36
제정일자 2018.10.29
최근개정 2025.3.31
개정차수 2차 개정
관리부서 평생교육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Ⅴ. 학위수여 및 학력인정 3.학위수여 절차 따라 학위수여 및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학위수여 및 유사전공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

1.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에 관한 학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유사전공심의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(개정 2024.7.24.)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기획실장, 교무처장, 평생교육본부장, 전공별 주임교수를 당연직으로 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25.3.31.)

② 위원장은 평생교육본부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4.7.24.,2025.3.31)

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는 평생교육팀에서 주관하며,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(개정 2024.7.24.)

제5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6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록, 심의자료, 심의결과 등 관련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 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

제8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36 학위수여및유사전공심의위원회운영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4호, 제3조제2항, 제4조제3항)

부 칙(직제규정) <2025.3.3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

<1> - <12> (생략)

<13> 학위수여및유사전공심의위원회운영규정(5-1-36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구성) ①,②항의 “평생교육원장”을 “평생교육본부장”으로 한다.

<14> - <17> (생략)